○○고 학생간 과실 관련 학생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3가소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손해배상(기)
원 고	○○○ 외 1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외 1
판결선고일	2015. 2. 4.	비 고	
사건개요	- ○○고 수업의 일환으로 2013.6월 중순경 경기도에서 래프팅 도중 피고 ●●●의 의도치 않은 과실로 원고 ○○○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되었고,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힘. - ●●●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하였고, 이 사고는 학교장 등의 학생 보호·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학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12,000,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 제기		
주 문	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-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○○○에게 10,000,000원, 원고 ◇◇◇에게 2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. 6. 25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		
판결이유	- 판결이유 미기재 - (☞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.)		